

감사 의견서

감사 이 성 우

감사 김 인 수

1. 감사 착수 배경

2018. 5. 10.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상임 이사회에서 이부섭, 류관희, 박병선, 유인수 등(이하 '일부 임원'이라 한다)이 제27대 총동창회 회장선임절차의 공정성과 서울대역사연구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건립자금의 기부지연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실상을 가려달라는 다른 참석자들의 요청이 있었다. 감사들은 이 요청을 신중히 수용하여 2018. 6. 20.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감사 근거와 감사 범위

(1) 감사 근거

이번 감사는 “監事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監査한다.”는 회칙 제9 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총동창회는 민법 제275조제1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등기부등본'과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과 제도가 준용될 뿐이다.

민법 제31조 이하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조직에는 총회와 이사 및 감사가 있는데, 이 중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필요적 상설기구이고(제57조, 제58조, 제59조) 감사는 임의기구이나(제66조) 일단 감사로 임명된 자는 법인과 이사의 모든 업무집행을 감사할 수 있다.(제67조)

총동창회의 부회장과 상임이사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으려면 총동창회 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그런데 총동창회 회칙 제8조제1항 후단과 제2항에 따르면 부회장(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 포함 ; 이하 같음)은 회장이 임명하고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 동창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이렇듯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민법의 비영리법인이나 상법상 회사의 이사처럼 총동창회를 대표하거나 회장을 견제하는 직위가 아니라 조력하는 직위이며, 회칙 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선임하는 직위는 회장과 감사이다.

부회장과 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장이 특정해서 부여한 업무를 할 수 있고, 해당 업무는 제9조제3항에 의하여 監事의 監査대상이 된다.

(2) 감사 범위

‘제27대 총동창회 회장 선임업무’와 ‘기록관 건립업무’를 대상으로 착수했으나, 회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처 회계’도 대상으로 했으며, 업무는 이성우 감사, 회계는 김인수 감사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감사 착수 이후, 일부임원이 다른 5인과 함께 제27대 총동창회 회장을 선임한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3. 감사 의견

(1) 제27대 총동창회 회장 선임

회칙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된 회원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일부 임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7. 3.까지는 회칙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상임이사회가 회장 후보를 정한 다음 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해 왔는데 2017. 3. 총동창회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회칙 제8조제1항을 개정해서 회장추대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회장선임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에 앞서 2017. 3. 이전 회장 선임절차에 관한 제도 및 그에 따른 선임절차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도 상임이사회에서 회장후보가 결정된 적은 없었다. 만약 상임이사회에서 회장후보를 결정한다면 이는 회칙에 근거가 없는 '회장 후보자격 제한'에 해당된다. 회칙에 명문의 근거를 따로 두지 않는 한 상임이사회는 회장후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공과대학동창회 회칙 제8조제1항은 이사회가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공과대학동창회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회칙 제9조는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에서 인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동창회에서는 상임이사회가 회장 후보를 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원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단과대학 회칙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칙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제27대 총동창회 회장 선임과정을 감사한 결과 회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설된 회장추대위원회가 추대한 후보를 총회에서 선임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회장추대위원회 또한 서울대학교 총장 및 공공기관장 추천위원회 등 유사사례를 최대한 참조하여 구성하였고, 회장이 재가

한 운영지침에 따라 추대절차를 실행하였으며, 해당 회칙은 2017. 3. 17. 정기총회에서 정상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영지침의 재가근거 및 내용과 실행과정을 살펴본 바, 제27대 총동창회 회장 선임과정에 있어 회칙이나 기타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없다. 특히 총동창회 회장선임절차에 이의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임원 중 2인(9인의 원고 중에서는 5인)도 신수정 후보를 총동창회 회장으로 선임한 2018. 3. 16. 정기총회에 참석했는데, 신수정 후보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만장일치 결의과정에서 이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2) 기록관 건립

2018. 5. 10. 상임이사회에서 일부 임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임 회장이 50억 원 기부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기록관 건립이 지체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총동창회와 서울대학교 간에 2014. 6. 11. 체결한 ‘서울대학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협약 당사자의 의무이행상황을 살펴보았던바, 총동창회는 협약 체결 즉시 협약 제3조(총동창회의 의무)에 따라 설계비 등의 용도로 10억 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90억 원의 기부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으나, 서울대학교는 건립부지만 결정했을 뿐, 협약 체결 후 4년 이상 경과한 지금까지 설계를 비롯하여 건축주로서 건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협약 제5조(서울대학교의 의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협약 체결 즉시 기부 받은 10억 원도 대부분 미집행상태에 있다.

이렇듯, 서울대학교가 나머지 90억 원을 기부 받을 수 있는 협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단법인 관악회도 감독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기부의 실행을 보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임회장이 약속한 기

부만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고, 총동창회를 위하여 협약서에 따라 기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기부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기록관 건립지연은 기부지연 때문이 아니고, 기부지연 또한 전임회장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총동창회는 학교 당국에 설계부터 조속히 착수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여 기부와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부를 약속한 그 누구라도 이유 없이 오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사무처 회계

사무처 회계와 관련하여 회장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① 2018. 5. 31. 현재 재무상태표의 현금 ₩1,997,020을 실사하고, ② 2018. 5. 31. 현재 재무상태표의 예치금 ₩3,192,523,558을 동일자 기준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대사하였으며, ③ 2018. 5. 31.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계정의 잔액을 계정별 거래원장과 대사하고 계정별 거래원장의 거래기록을 확인하였으며, ④ 2018. 5. 31.로 종료되는 5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계정의 잔액을 계정별 거래원장과 대사하고, 계정별 거래원장의 거래기록을 확인하였으며, ⑤ 2018. 5. 31.로 종료되는 5개월 보고기간 동안 총동창회가 사무총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있는지 확인하고, ⑥ 2018. 5. 31.로 종료되는 5개월 보고기간의 지급품의 서와 지출증빙의 금액을 대사하였으며, ⑦ 2018. 6. 22. 현재 서화재고 목록의 서화를 실사한 결과,

① 현금 실사금액은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일치하고, ② 예치금 대사 금액은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일치하였으며, ③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금액은 계정별 거래원장의 잔액과 일치하고, 계정별 거래기록 중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④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의 금액은 계정별 거래원장의 잔액과 일치하고, 계정별 거래원장의 거래기록 중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⑤ 사무총장에게 지급한 급여는 발견되지 않았고, ⑥

지급품의서와 지출증빙의 금액은 일치하였으며, ⑦ 서화 재고실사 결과와 서화재고목록이 일치하는 등 회계 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4) 총회결의 무효소송

제27대 총동창회회장 선임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일부 임원은 다른 5인과 함께 총회결의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소장은 2018.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되었고, 2018. 6. 27. 총동창회에 도달되었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총회결의에 승복하지 않는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총동창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성인 집단을 자처하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관련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접하게 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도 숙고를 거듭하여 내린 결정이었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원고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제기 사실을 총동창회 회원은 물론 언론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이런 활동을 공연히 유포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와 공과대학 동창회 홈페이지를 열람하니, 지난 10월 21일 홈커밍데이 행사에 불참을 유도하는 알림 창을 띄우고 첨부문서 또는 공지사항으로 총회결의무효 확인 소송준비일지와 소송 제기 후의 언론 보도 노력까지 홍보하고 있다.

하자있는 총회결의를 통해 선임된 회장의 직무를 합법적으로 막고 싶으면 회장단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이미 1979년 8월 신민당 총재단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이래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40년 동안 판례로 확립된 제도이다.

39년차 지속된 총동창회 최대행사인 홈커밍데이를 회장의 직위를 부인하여 그 집행을 막고자 한 것이라면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와 함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 법무법인까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면서도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회장 선임과정의 문제점’이라면서 홍보하고 이러한 활동을 공지하는 것은 회칙 제2조의 본회의 목적(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내부에서 다룰 수는 있겠지만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삼가했으면 한다. 문제해결을 법원에 맡기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기왕에 맡겼다면 재판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소송제기 사실과 내용이 비방이나 거래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향후의 감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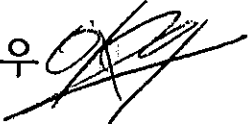
총동창회장 선임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이행과정을 감사하고, 기록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그 추진과정을 감사할 것이며, 일부 임원이 주장하는 회계 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감사하는 한편, 근거 없는 무고 사실의 유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감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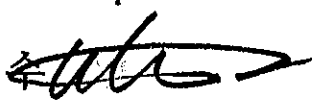
총동창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번에 발견한 바와 같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칙 및 법령상의 특단의 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사는 이를 감사할 것이다.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감사는 상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사무처는 이사회 등의 임원회의나 각종 위원회의 개최계획을 감사에게 통지하고 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감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는바, 이 감사 의견서는 회장이
적절한 범위와 수단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2018. 10. 31.

감사 이 성 우 

감사 김 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귀중